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1284호 2020년 9월 4일(금)

공 고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토지 출입 공고 ····· 2

입법예고

○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2223, FAX : 639-2799)

속초시 공고 제2020 - 913호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토지 출입 공고

속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공원 : 만리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을 공고합니다.

2020. 9. 4.

속 초 시 장

– 아 래 –

가.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 만리공원) 조성사업

○ 사 업 위 치 : 속초시 교동 767-39일원(만리공원)

○ 사업 시행자 : 속초시장(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나. 출 입 자 : 공익사업 업무관련자 등

다. 출입기간 : 공고일로부터 ~ 사업종료 시까지

라. 출입목적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물건(지장물)조사, 측량, 감정평가 등

마. 출입할 토지구역 : “붙임” 출입할 토지의 내역 조서와 같음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

바. 문 의 처 : 속초시청 공원녹지과 공원보상T/F팀(033-639-3791)

사. 기타

○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주소불명 등 미송달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출입대상 토지의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만리공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19,510	74,305					
1	교동	767-39	전	575	54	윤*문외 2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4-242			
2	교동	775-2	수	1,157	1,157	이*석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785			
3	교동	779-16	학	24,233	1,059	공	속초시			
4	교동	784-81	도	2,346	1,406	공	속초시			
5	교동	796-2	과	1,529	1,529	심*식외 8인	속초시 중앙동 472-3			
6	교동	796-3	전	7,669	7,669	심*식외 8인	속초시 중앙동 472-3			
7	교동	796-4	대	400	400	심*식외 8인	속초시 중앙동 472-3			
8	교동	796-5	과	910	910	심*식외 8인	속초시 중앙동 472-3			
9	교동	796-8	전	23	23	이*순	속초시 교동 799-8			
10	교동	796-30	도	1,367	150	국	국토해양부			
11	교동	796-31	도	1,342	129	국	국토해양부			
12	교동	796-32	도	74	74	국	국토해양부			
13	교동	796-57	전	153	153	국	국토해양부			
14	교동	796-58	도	3,297	430	공	속초시			
15	교동	796-59	대	446	13	하*자외 3인	속초시 만리공원길 48-25			
16	교동	796-60	도	6,371	453	국	국토해양부			
17	교동	798-5	전	322	322	공	속초시			
18	교동	798-6	전	809	809	공	속초시			
19	교동	798-7	전	858	858	공	속초시			
20	교동	798-61	전	661	661	곽*연	속초시 교동 산798-4			
21	교동	799-14	대	14	14	박*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82-6			
22	교동	800-69	임	1,786	1,786	공	속초시			
23	교동	산222-1	임	6,859	6,463	이*석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785			
24	교동	산222-12	임	812	666	공	속초시			
25	교동	산222-13	임	1,333	5	윤*문외 2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4-242			
26	교동	산231-2	임	6,615	5,458	편*현	속초시 동해대로 4210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7	교동	산231-5	임	1,269	1,269	강*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8-2			
28	교동	산231-12	임	63	63	공	속초시			
29	교동	산231-17	임	2,645	1,695	공	속초시			
30	교동	산236-1	임	5,190	5,190	속초시 외 7인	속초시			
31	교동	산236-2	임	496	496	공	속초시			
32	교동	산236-3	임	6,711	6,640	공	속초시			
33	교동	산236-12	임	13,337	13,232	심*식외 8인	속초시 교동 800-14			
34	교동	산236-23	임	469	469	최*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24			
35	교동	산236-28	도	520	348	국	국토해양부			
36	교동	산236-34	도	62	50	심*식외 8인	속초시 교동 800-14			
37	교동	산236-35	도	1,436	1,128	공	속초시			
38	교동	산236-42	임	39	31	국	국토해양부			
39	교동	산236-50	임	38	38	공	속초시			
40	교동	산238-1	임	3,089	2,562	김*원	속초시 교동 산238-1			
41	교동	산238-3	임	1,550	1,550	공	속초시			
42	교동	산247-8	임	191	181	박*용	속초시 영랑로4길 10			
43	교동	산247-12	임	429	388	박*용	속초시 영랑로4길 10			
44	교동	산307-6	임	418	418	박*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8-1			
45	교동	산307-21	임	62	62	국	국토해양부			
46	교동	산316	도	9,535	5,844	국	국토교통부			

속초시 공고 제2020 - 909호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 요청 시 일정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시 편의·위생용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용어 및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주민 누구나 알기 쉽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하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나.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시 편의·위생용품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지원근거 마련(안 제13조)

다.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조항 수정(안 별표 1)

라. 공중화장실 규모 및 편의시설 내역 등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마.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
- 연락처 : 033-639-2747 (FAX 033-639-238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33-639-2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으로, “지원시설중”을 “지원시설 중”으로,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 제9호”를 “법 제3조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위하는자”를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필요한”으로, “실시 할”을 “실시할”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0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비치 하여야”를 “비치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물내부”를 “건물 내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시장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편의위생용품등”을 “편의·위생용품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하천주변”을 “하천 주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분 되도록”을 “구분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상복구 하여야”를 “원상 복구하여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설치”를 “따로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화장지, 방향제, 탈취제 등”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전반”을 “시설 전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table>
<tr><td>화장실 명칭</td><td colspan="3"></td><td>소 재 지</td><td colspan="5"></td></tr>
<tr><td>화장실 종류</td><td colspan="3">□ 공공, □ 민간</td><td rowspan="3">관리
책임자</td><td>소 속</td><td colspan="5"></td></tr>
<tr><td>설치연도</td><td colspan="3"></td><td>직 급</td><td colspan="5"></td></tr>
<tr><td>설치(관리)주체</td><td colspan="3"></td><td>성 명</td><td colspan="5"></td></tr>
<tr><td>관 리 인</td><td colspan="3">(☎ :)</td><td colspan="2">월평균 이용인원</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시설규모</td><td rowspan="2">부지
(㎡)</td><td rowspan="2">면적
(㎡)</td><td colspan="3">대변기 수</td><td colspan="2">소변기수</td><td colspan="2">대변기</td><td colspan="2">비상벨</td><td rowspan="2">CCTV
유무</td><td rowspan="2">남녀분리
유무</td></tr>
<tr><td>남자</td><td>여자</td><td>장애인</td><td>성인</td><td>유아</td><td>양변기</td><td>재래식</td><td>남자</td><td>여자</td></tr>
<tr><td rowspan="2">편의시설
내역</td><td>세면
시설</td><td>냉방
시설</td><td>난방
시설</td><td>핸드
드라이어</td><td>손
세정제</td><td>위생용품
자판기</td><td>탈취제
(방향제)</td><td colspan="2">기저귀교환대</td><td>수유
시설</td><td colspan="2">청소
도구함</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남자</td><td>여자</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시설관리
내역</td><td>년월일</td><td colspan="2">관리내역</td><td>금 액
(천원)</td><td>년월일</td><td colspan="2">관리내역</td><td>금 액
(천원)</td><td>년월일</td><td colspan="2">관리내역</td><td colspan="2">금 액
(천원)</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table>
<tr><td colspan="8">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td><td>처리기간
3일</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상 호(명칭)</td><td colspan="7"></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3"></td><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3">시설현황</td><td>소 재 지</td><td colspan="4"></td><td>관리주체</td><td colspan="2"></td></tr>
<tr><td>관 리 인</td><td colspan="4">(☎ :)</td><td>설치년도</td><td colspan="2"></td></tr>
<tr><td>규 모</td><td colspan="7">부지면적 : ㎡, 화장실 면적 : ㎡</td></tr>
<tr><td rowspan="4">시설내역</td><td rowspan="2">시 설 내 역</td><td colspan="3">대변기 수</td><td colspan="2">소변기 수</td><td colspan="2">대변기 유형</td></tr>
<tr><td>남자용</td><td>여자용</td><td>장애인용</td><td>성인용</td><td>유아용</td><td>양변기</td><td>재래식</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편 의 시 설</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1회 사용료</td><td colspan="7">원</td></tr>
</table>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table>
<tr><td rowspan="3">대표자</td><td>상 호(명칭)</td><td colspan="7"></td></tr>
<tr><td>성 명</td><td colspan="7"></td></tr>
<tr><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관 리 인</td><td colspan="7">(☏ :)</td></tr>
<tr><td rowspan="4">시설내역</td><td rowspan="2">시 설 내 역</td><td colspan="3">대변기 수</td><td colspan="2">소변기 수</td><td colspan="2">대변기 유형</td></tr>
<tr><td>남자용</td><td>여자용</td><td>장애인용</td><td>성인용</td><td>유아용</td><td>양변기</td><td>재래식</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편 의 시 설</td><td colspan="2">세면시설</td><td colspan="2">냉·난방시설</td><td colspan="2">에어타올
(페이퍼타올)</td><td colspan="2">환풍시설</td></tr>
<tr><td colspan="2">대</td><td colspan="2">대</td><td colspan="2">대</td><td colspan="2">대</td></tr>
<tr><td colspan="2">1회 사용료</td><td colspan="8">원</td></tr>
</table>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 제	제3조(적용의 범위)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② ---------- ------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 ---- 지원시설 중 ---------- ---------- ---------- 제3항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 ---------- ----------.
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시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 ---------- ---------- ---------- ---------- ----------.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1 . ---------- - 영위하는 사람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 ---------- 사람은 ---------- ---------- ----------

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 ---------- ---------- ---------- ---------- 사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 ----- 사람 ---------- ---------- ----------.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생 략)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 필요한 ---------- ---------- 실시할 -------.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접근이 가능한 도로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산간계곡 등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 ---------- 사람은 -- ---------- ---------- 각 호---------- ----------. ---------- ---------- ---------- ----------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사람은 ---------- 각 호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3 . ---------- - 연 1회 ----------.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 사람은 ---------- 비치하여야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 략)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	② 제1항에 따라 ----------. - ---------- 건물 내부

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 ----------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법 제9조에 따른 ---------- ---------- ---------- ---------- ---------- ---------- ----.
<신 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 ---------- ----------.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 ---------- 사람 ---------- ---------- 편의·위생용품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

제14조(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의 설치) ① (생 략)	제14조(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간,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하천 주변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 구분되도록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각 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 원상 복구 하여야 ----.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 시장이 설치하는 간이화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 ----------

장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 ---------- 따로 설치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화장지, 방향제, 탈취제 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및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 사람은 ---------- ---------- -- 별지 제2호서식 ---------- ---------- 각 호 ---------- ----------. ---- 시설 전반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	② 제1항에 따라 ---------- ---------- 사람은 --

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3호서식----------.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1조에 따른 ----------.

관 계 법 령 발 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